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 관련 수수료

공장심사부, 2026-03-17

□ 관련 근거

○ 공사 사업비용에 관한 규정(13100) 및 사업비운영요령(13110)

사업비용에 관한 규정(13100)	
(개정 2025. 12. 29)	
제3조 ② 법 제28조제2항제15호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수익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부터 11.까지 (생략)	
12. 기타 공사에 유상으로 의뢰하는 사업	
제4조(비용산정기준) ① 제3조의 사업에 관한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터 14.까지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추가 수납한다.	
가.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 등을 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나.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사 여비규정에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	
④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비용 범위 내에서 행정비용 또는 기본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사업비운영요령(13110)	
(개정 2025. 12. 26)	
제13조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비용) 규정 제3조제2항제12호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공사에 유상으로 의뢰하는 외주품질관리 등록심사비용은 별표 7와 같다	
제19조 (증명서 등의 발급비용) 규정 제4조제7항에 근거하여 수익자 귀책으로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양성교육수강자격시험 및 제시험 응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로 작성된 서류의 1매마다 제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신청인이 우송을 원할 경우 등기 발송 1건당 2,000원을 추가한다.	
가. <생략>	
나. 증명서, 검사증명서, 검사성적서,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생산단계검사의 심사합격증명서 등 : 3,000원다. <생략>	
2. 1호의 서류를 외국어로 발급할 경우 1매 마다 비용은 1호의 비용에 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부터 4.까지 <생략>	

(별표 7)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비용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를 위한 최초심사, 갱신심사, 사업장추가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에 따르며 현장심사를 위한 출장비는 공사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구 분		금 액	
		서류심사	현장심사
국내	최초심사	689,000	689,000
	갱신심사	344,000	689,000
국외	최초심사	1,377,000	1,377,000
	갱신심사	1,033,000	1,377,000
1. 사업소 중 사업장 추가 또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심사비용을 징수한다. 2. 공장심사와 별도로 신청하는 국외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의 경우 추가수수료 (이동 소요일수 × 현장심사비용 × 50%)를 징수한다. 3. 비용을 국제통화(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에 한한다.)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의 최종환율을 적용한다.			